
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삭제 조항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(2028년 12월 31일까지)
 -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조)
 -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(안 제3조)
 -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에 대한 감면(안 제4조)
 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6조)
 -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8조)
 -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- 삭제된 조항의 자리에 기존 조항을 순차적으로 이동(안 제3조~제21조)
- 상위법 개정 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, 제12조, 제17조, 제19조, 제2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삭제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6가지 감면 항목을 일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감면 제도의 지속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.

- 삭제된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앞당겨 재배치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아울러,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감면 항목의 적정성 재검토에 활용하고, 감면 혜택이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